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제정 당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대상이 50대 주민 한정이었으나, 의회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을 50대 주민 우선으로 수정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이에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변경(조례 전체)
- 정신건강검진 우선지원 대상 “50대”를 “19세 이상”으로 변경(안 제5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8조)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과 조례 전체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용어를 변경함.
 - 안 제5조(지원대상)에서 정신건강검진 대상의 나이를 현재 사업 추진 내용에 맞게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 안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는 상위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53조 및 제54조에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에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등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
- 검토 결과
 - '15년 서울시에서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구(區)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지원대상을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로 특정한 것은 사업 시행 당시 정부에서 40세와 66세는 두 차례 생애전환기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있었지만, 은퇴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50대는 제외되고 있는 세대를 반영한 이유로 사료됨.
 - 한편, 본 조례 제정 당시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으나 위원회 회의 중 연령대를 명시한 조례명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모아져 제명에서 “50대”가 삭제되고, 제5조의 지원대상은 “50대 주민 중”에서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따라서, 구(區)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50대 주민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추후 서울시에서도 관련 사업의 대상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정신건강검진대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정신건강’ 대신 ‘마음건강’으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김지연、신홍식、유승용
우경란 의원(4인)

1. 제안이유

해당 조례 제정 당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대상이 50대 주민 한정이었으나, 의회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을 50대 주민 우선으로 수정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이에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5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2. 8.~ 2. 1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건강검진비”를 “마음건강검진비”로,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을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마음건강검진·상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건강검진기관”을 “마음건강검진기관”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마음건강검진·상담”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검진에”를 “마음건강검진에”로, “정신건강검진 및”을 “마음건강검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마음건강검진·상담”으로 한다.

제4조 중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한다.

제5조 중 “정신건강검진대상은 50대”를 “마음건강검진대상은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중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신건강검진내역”을 “마음건강검진내역”으로 한다.

제8조 중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를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정신건강검진”을 각각 “마음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0조 중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마음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마음건강검진 -----

-----.

제2조(정의) -----
-----.

1. “마음건강검진·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

-----.
2. -----
--마음건강검진비-----
-----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마음건강검진·상담 -----.
3. -----
--마음건강검진기관-----
----- 마음건강검진·

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생략)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

상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마음건강검진
에 -----
----- 마음건강검진 및

--.

② -----
-----.

1. 마음건강검진·상담 -----

2. (현행과 같음)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마음건강검진-----

--.

제5조(지원대상) 마음건강검진대상은 19세 이상 -----

--.

제6조(지원내용) ----- 마음건강검진-----

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u>정신건강검진</u>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u>정신건강검진내역</u> 3. 4. (생략) ② (생략)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u>마음건강검진</u>----- ----- -----. 1. (현행과 같음) 2. ----- ----- <u>마음건강검진내역</u>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u>정신건강검진</u>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u>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u>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 ----- ----- ----- <u>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u>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정신건강검진</u>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u>정신건강검진</u> 지원 절차 및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 ----- -----. 1. <u>마음건강검진</u> ----- ----- ----- 2. <u>마음건강검진</u> -----

지원범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u>정신건강</u> <u>검진</u>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u>마음건강</u> <u>검진</u> -----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u>정신건강검진</u> 지원 활 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 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u>마음건강검진</u> ----- ----- ----- ----- ----- ----- ----- -----.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생 략)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 에 따라 <u>마음건강검진</u>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 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u>아니 된다.</u>